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(공정거래위원회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(이하 ‘전자심의시스템’)을 통해 송달·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0239호, 2024. 2. 6. 공포, 2027. 2. 7. 시행)됨에 따라, 그 후속조치로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, 관련 하위고시 제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 및 제출가능한 자료 (안 제83조의3)

- 1) 전자심의시스템 ‘이용자’(당사자등)는 사건의 당사자(피심인), 사건의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, 그 밖에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함.
- 2) 심의에 필요한 문서 외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‘제출가능한 자료’는 음성, 영상 등 파일의 형식을 불문하고 심의에 제출하는 자료로 함.

나. 송달문서 등재사실의 통지 방법 (안 제83조의4)

- 1) 당사자등이 전자심의시스템에 기재한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(전자우편, 문자메시지등)하여 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.

- 2)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등이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때 통지의 효력이 발생함을 명확히 규정함.

다. 전자문서 확인 불가 기간의 계산 방법 (안 제83조의5)

- 1) 전자심의시스템 장애로 등재 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일을 도달 간주 산정 기간(의결서·재결서 2주, 그 외 7일, 이하 같음)에 불산입하도록 함.
- 2) 다만, 전자심의시스템 유지·보수를 위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등재 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도 도달 간주 산정 기간에 산입하도록 함.

라. 고시 제정근거 마련 (안 제83조의6)

- 1)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 등록 방법 등 그 이용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 근거를 마련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- 2) 입법예고(2026. 3. 24. ~ 5. 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3) 행정규제 : 해당사항 없음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장에 제83조의3부터 제8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3조의3(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등) ① 법 제98조의2제1항에서 “당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(이하 “당사자등”이라 한다)”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

1. 사건의 당사자
2. 사건의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
3.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

② 법 제98조의2제1항에서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”란 음성·영상 등 파일형식을 불문하고 심의에 제출하는 자료를 말한다.

제83조의4(통지의 방법 등) ① 법 제98조의2제4항에서 “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”이란 당사자등이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고,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나 이에 준하는 메시지(이하 “문자메시지등”이라 한다)를 보내는 방법을 말한다.

② 제1항의 통지는 전자우편이 전자우편주소로 전송된 때 또는 문자메시지등이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때 효력이 생긴다.

제83조의5(기간의 계산) ① 법 제98조의2제6항 후단에 따라 기간을 계산

할 때에는 당사자등이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법 제98조의2제5항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그 기간의 마지막 날 오전 9시 이후에 전자정보처리조직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게 된 때에도 1일을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②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유지·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83조의6(전자정보처리조직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)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7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83조의3(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등) ① 법 제98조의2제1항에서 “당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(이하 “당사자등”이라 한다)”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</u> <u>1. 사건의 당사자</u> <u>2. 사건의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</u> <u>3.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</u> <u>② 법 제98조의2제1항에서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”란 음성·영상 등 파일형식을 불문하고 심의에 제출하는 자료를 말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83조의4(통지의 방법 등) ① 법 제98조의2제4항에서 “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”이란 당사자등이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고,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나 이에 준하는 메시지(이하 “문자메시지등”이</u>

<신 설>

<신 설>

라 한다)를 보내는 방법을 말한다.

② 제1항의 통지는 전자우편이 전자우편주소로 전송된 때 또는 문자메시지등이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때 효력이 생긴다.

제83조의5(기간의 계산) ① 법 제98조의2제6항 후단에 따라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당사자등이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법 제98조의2제5항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그 기간의 마지막 날 오전 9시 이후에 전자정보처리조직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게 된 때에도 1일을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②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유지·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83조의6(전자정보처리조직의

	<u>이용에 관한 사항 등) 전자정보 처리조직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</u>
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	
연 락 처	(044) 200 - 4134